

10 (목)	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기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권거래세신고 납부기한
16 (수)	개산보험료(고용, 산재) 분납기한
	3월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31 (목)	주세(교육세 포함)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균등할 주민세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동산 투자로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J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J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씨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다만,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5년간